

<p>※이 지역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접경지역으로서 양천구 중심지에도 강서구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요구됨.</p> <p>5. 심사결과 보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5px 0;">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85%;">78</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 지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위치 : 강서구 내발산동 719, 723, 강서구 화곡동 1006, 1013 일대 ○내용 · 용도지역변경 :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27,059㎡) · 용도지구지정 : 도시설계지구(27,059㎡)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민의견 청취결과 :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p> <p>3. 주요요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5px 0;"> <thead> <tr> <th style="width: 25%;">구역명</th> <th style="width: 40%;">위 치</th> <th style="width: 15%;">면적(㎡)</th> <th style="width: 2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신공덕 제3</td> <td>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td> <td>14,569</td> <td>신규 지정</td> </tr> </tbody> </table> <p>○구역현황 -면 적 : 14,569㎡ (국·공유지 4,829㎡, 사유지 9,740㎡) -건축물 : 180동(유허가 95동, 무허가 85동) -세대수 : 379세대(가옥주 181세대, 세입자 198세대)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 지구, 일부2종미관지구. -주민동의율 : 토지(87.9%), 건축물(81.6%)</p> <hr/> <p>사당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p>	의안 번호	78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공덕 제3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14,569	신규 지정	<p>○강서구 내발산동 719, 723과 화곡동 1006, 1013 일대 우장산역 생활권중심지인 27,059㎡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아울러 같은 지역을 생활권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보면, 우장산 전철역 도로에 따라 장방향으로 준주거지역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정한 도시계획 변경기준 모델과 맞지 않아 재검토가 요구됨.</p> <p>5. 심사결과 보류</p> <p>.....</p> <p>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년월일 : 1995. 8.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p> <p>1. 건 명 :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2. 제안이유 :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관한 의견청취</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년월일 : 1995. 8.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p> <p>1. 건 명 : 사당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사당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의안 번호	78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공덕 제3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14,569	신규 지정								

3. 주요요지
○입안내용

구역명	구역면적변경(㎡)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사당 제6	4,763	증) 1,027	5,790	일부추가

○추가지역현황
 -위 치: 동작구 사당동 105-14번지 일대
 -면 적: 1,027㎡(구유지)
 -건 축 물: 없음
 -도시계획사항: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4. 추진경위
 ○'91. 2.11 구역지정(건설부고시 제67호)
 ○'91. 8.17 사업계획결정(서고시 제253호)
 ○'93. 6.14 사업시행인가(동작구고시 제23호)
 ○'93. 9.25 구역변경(건설부고시 제376호)
 ○'94. 6.13 사업계획변경결정(서고시 제1994-192호)
 ○'95. 5. 8 사업시행변경인가(동작구고시 제1995-19호)

5. 변경결정사유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 완료후 기부채납되는 공공공지가 당해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맹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당해구역 북측에 개설예정인 소로3류 18호(4m) 도시계획도로의 일부토지(당해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당해구역에 포함하고자 함.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제출년월일: 1995. 9. 6.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2. 제안이유
 ○강남구 도곡동 산 34-8 입야 195㎡는 폭원 6m 도로에 의하여 도곡근린공원에 서 분리되어 있는 자투리 공원용지이고
 ○강남구 도곡동 150 외 2필지 315㎡(사유지 192㎡, 구유지 123㎡)는 도곡근린공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거 자투리 공원용지는 해제하고, 공원용지에 접한 토지는 공원에 편입하여 합리적으로 공원 경계를 조정코자 함.
 ※공원지정 대상인 도곡동 150 전 192㎡(사유지)는 기부채납 예정

3. 주요요지
○입안내용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변경 결정	도 곡 근 린 공 원	강남구 도곡동 150 일대	249,897	250,107	증 120	공원의 불합리한 경계조정

4. 참고사항
 ○도시계획사항: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일부)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